

호서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 제6조 및 호서대학교 학칙 제10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중앙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으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이에 따른 구성 및 기능,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사부총장, 중앙도서관장 및 각 단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및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 1인을 포함하여 총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8. 5. 17., 2020. 9. 8.)

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중앙도서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2. 대학도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5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학술팀장으로 한다.

부 칙(2016. 6. 2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5. 1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9. 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